

2. 주요 내용

가.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지정병원)의 확대(안 제44조)

현행 지정병원은 대도시에 편중된 반면 석면피해자 다수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지정병원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명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지정하여 지정병원의 수를 약 2배 확대함(55개소→103개소)

나. 석면피해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실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절편 단위와 폐를 6개로 나누는 방식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석면 피해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물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2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또한 호흡노출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고시 별표 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제한(0.6% 이하)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종)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 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안) >

구분	사용금지	함량제한	기타
부동액	-	-	어는점 등 9개 기준
자동차용 워셔액	-	메틸알코올	어는점 등 11개 기준
습기제거제	-	카드뮴 등 6종	조해액의 누설성
양초	-	납	-
틈새충진제	알루미늄 등 2종	폼알데하이드 등 10종	-